

#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11.1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활용하고,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선발 과정의 절차 간소화(조례안 제5조 및 제9조)

나.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최소화 활용(조례안 별지서식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5. 10. 17. ~ 11. 05.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520호, 인재육성과-10450(2025. 10. 17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0172(2025. 10. 10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0172(2025. 10. 10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41081(2025. 11. 10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7683(2025.11.11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7900(2025. 11. 13.)호]

##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”을 “부족한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심의”를 “심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자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<u>평창군정조정위원회</u>에서 결정된 학생</p>	<p>제5조(자격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부족한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선발 및 심의) ① <u>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선발 및 심사) &lt;삭제&gt;</p> <p>① ~ ③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## 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/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
연락처	(033) 330 - 2020